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8. 11 선고 2016나75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8. 11 선고 2016나7577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3 선고 2015가단4640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종결 2017. 7. 12.

판결 선고 2017. 8. 11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5가단46406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9,104,606원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 총비용 중 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9,336,720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건물 및 담장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를 각 취하하고, 부당이득금 청구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·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.

5) 피고는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6. 9. 2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해오다가 2016. 9. 29. 그 점유를 상실하였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 기간(2011. 12. 1.부터 2016. 9. 29.까지 4년 9개월 29일)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9,104,606원[7,642,010원(2011. 12. 1.부터 2015. 11. 30.까지 4년) + 1,462,596원{1,320,740원(2015. 12. 1.부터 2016. 8. 31.까지 9개월) + 141,856원(29/30 × 월 146,748원)}]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(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과 담장의 철거 청구, 위 토지의 인도 청구를 각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판사오덕식

판사최상수

판사강면구